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38

발의연월일: 2021. 10. 29.

발 의 자: 박홍근 · 신정훈 · 김홍걸

이용우・남인순・서영교

유후덕 • 이동주 • 김영배

김민철 · 전용기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에너지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에너지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연구 플랫폼을 확보하고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제정(법률 제17982호, 2021. 4. 1. 공포, 2021. 5. 2. 시행)하여 특수법인인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하였음.

이에 위 대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위 대학교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 대학교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인류 · 국가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제1호라목7)).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라목7) 중 "울산과학기술원"을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 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정기부금 단체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21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	②
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	
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	
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	
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	
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1
해당하는 기부금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	라
한다)에 시설비・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	
출하는 기부금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7)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대구경북과 학기술원 및 「울산과학 기술원법」에 따른 <u>울산</u> 과학기술원

8) ~ 9) (생 략) 마.·바. (생 략) 2. (생 략)

③ ~ ⑥ (생 략)

	울산
과학기술원, 「한국	에너
지공과대학교법」에	<u> 따른</u>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u>!</u>
8) ~ 9) (현행과 같음)	
마.ㆍ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